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80 발의연월일: 2022. 5. 3.

발 의 자:정태호·송갑석·이수진

김경만 • 한병도 • 강선우

홍성국 · 김교흥 · 황운하

홍익표 · 김상희 · 신정훈

최기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 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 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

최근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바가 있어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 일몰기한인 2022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욱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 022년 8월"을 "2027년 8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2항의	제2조(유효기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2년 8월</u> 2일까지 효력을 가	<u>2027년 8월</u>
지고,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